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. 1. 18 선고 2022가단1537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2. 21.

판 결 선 고 2023. 1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1,050,000원 및 그 중 10,15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2. 3.부터, 10,3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2. 18.부터, 10,60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1. 18.부터 각 2022. 10. 2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21. 11. 17. 소외 C에게 1,015만 원은 변제기를 2021. 12. 2.로 정하여, 1,030만 원은 변제기를 2021. 12. 17.로 정하여, 1,060만 원은 변제기를 2022. 1. 17.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소외 D1) 이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합계 3,105만 원 및 그 중 1,015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1. 12. 3.부터, 1,03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1. 12. 18.부터, 1,06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2. 1. 18.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. 10. 2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한소희

1) D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2차197호 사건의 2022. 6. 3.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.